

증명출장소소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993. 12.

내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목 차

I. 일반회계

1. 개 요 ----- 808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및 증감내역 ----- 808

나. 증평출장소 세출예산안 규모 및 증감내역 ----- 809

2. 검토의견 ----- 811

1. 개요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및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액	(%)	금액	(%)	금액	(%)
합계	333,963	100	333,183	100	780	0.3
기본경상비	56,026	16.8	55,309	16.6	717	1.3
인건비	30,260	9.1	30,511	9.2	△ 252	△0.8
판서운영비	13,935	4.2	13,925	4.2	10	0.1
기본경상비	11,831	3.5	10,872	3.2	959	8.8
사업비	193,908	58.0	193,132	58.0	776	0.4
경상사업비	14,017	4.2	13,059	4.0	958	7.3
주요사업비	179,891	53.8	180,073	54.0	△ 182	△0.1
기타경비	84,029	25.2	84,742	25.4	△ 713	△0.8

- '93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331억8천3백만원 대비 0.3%인 7억8천만원이 증액된 3,339억6천3백만원 규모임.

나. 증평출장소 세출예산안 규모 및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14,081	100	14,444	100	△363	△2.5
기본경상비	5,079	36.1	5,298	36.7	△219	△4.1
인 건 비	3,106	22.1	3,362	23.3	△256	△7.6
관서운영비	1,312	9.3	1,312	9.1	-	-
기본경상비	661	4.7	624	4.3	37	5.9
사 업 비	8,836	62.8	8,980	62.2	△144	△1.6
경상사업비	944	6.7	953	6.6	△9	△0.9
주요사업비	7,892	56.1	8,028	55.6	△136	△1.7
기 타 경 비	166	1.1	166	1.1	-	-

- 증평출장소 소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44억4천4백만원에 대해 2.5% 감액된 140억8천1백만원임.
- 도전체 일반회계예산액 3,339억6천3백만원에 비하면 4.2%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 증감내역을 세분하면

첫째, 인건비에서 2억5천6백만원이 감액 되었는바,

- . 결원3명과 신규 직원이 채용됨에 따라 봉급액 차액이 발생된데 기인함.

둘째, 물건비에서 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 . 공무원 출장여비 1천5백만원과 취약 구입 1백만원 증액된데 기인하며

셋째, 경상이전 1억3천6백만원이 감액 되었는바,

- . 보육시설 기능보강 (신축1개소) 9천6백만원과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3천5백만원 노령수당 5백만원으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로 인해 감액된것에 기인함.

넷째, 자본지출 7백만원이 감액 되었는바,

- . 새마을사업비 건강안 국토가꾸기사업으로 사업변경되어 '93. 2회 추경에 계상지원 되었는바 이에대한 조정으로 7백만원이 감액된데 기인함.

2. 검토의견

- 1993년도 중평출장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3,339억6천3백만원중 140억8천1백만원 규모로 총 세출예산의 4.2%를 점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증가율 0.3%보다 2.8%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인건비와 주요사업비인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 대상자 보상금, 보육 시설 보강사업, 우수 새마을특별지원사업등에 있어서 계획변경 및 사업 과목변경 등에 의해 국고보조액이 감액처리 계상 된것으로 보여짐

○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 인 건 비 △2억5천6백만원 (7.6%감)
- 기본경상비 3천8백만원 (5.9%증)

. 사업비에 있어서는

- 경상사업비 △9백만원 (0.9%감)
- 주요사업비 △1억3천6백만원 (△1.7%감)

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세분해서 분석해 보면

첫째, 인건비가 2억5천6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 급 여 △1억1천8백만원
- 상 여 금 △7천만원
- 정액수당 △6천8백만원 으로

이는 결원 3명분의 인건비와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하여 인건비 책정 기준상 예산에 비해 적게 지출되어 발생한 차액분이 감액된데 기인함.

둘째, 기본경상비에 있어 3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바,

- 국내여비 1천5백만원
-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2천1백만원
- 농어민자녀 학자금 보상 1백만원 으로

이는 직원증원에 따른 국내여비와 명예퇴직자 1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인정하여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셋째,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9백만원이 감액 되었는바,

- 노령수당 △(X) 5백만원
- 저소득 모자가정 보상금 △(X) 3백만원
- 의무자 여비보상 △(X) 1백만원 으로

이는 국고보조액이 감액된데 기인함.

내책,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1억3천6백만원이 감액 되었는바,

-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층 학비지원, 거택보호 구료비등
△(×) 3천2백만원
-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및 보육시설 운영비
△(×) 9천7백만원
-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
△(×) 7백만원 으로

이는 새마을사업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사업과목의 변경과 보육 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보육원 신축 1개소분 및 저소득층 학비보조 등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에 의해 감액된데 기인함.